

# ‘전공의 면허정지 행렬’ 임박...35명 오늘 의견제출 기한 만료

기한 만료 후 행정처분 가능...사전통보는 7088명  
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서 제출·52시간 근무  
일각선 복귀 움직임...전공의 보호 센터 73건 신고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중 35명이 25일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35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5일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만료되는 전공의는 35명이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 발표와 함께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이를 위반한 전공의에게는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사전통지 후 약 20일 간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했으나 이 기간 의견을 개진한 사례는 1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절차상 사전통지 후 의견 제출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25일 35명의 의견 제출 기간이 경과하면 26일부터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복지부도 이번 주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하겠다면서, 3월 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25일을 시작으로 의견 제출 기간이 경과해 실제 처분이 가능해지는 전공의 수는 점점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21일 오전 11시 기준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서면 점검을 한 결과, 전공의 1만2899명 중 92.8%인 1만1976명이 계약을 포기했거나 근무지를 이탈했고 이중 7088명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다.

면허가 정지되면 봉사활동을 포함해 의사명의로 할 수 있는 일체의 활동이 금지된다. 이미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서울시사회장 처분 통지서를 보면 국내외 의료봉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안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의 면허정지가 코 앞에 다가오면서 이들을 지키겠다는 의대 교수들의 단체 행동도 가시화되고 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19개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전국 40개 의대 중 39개 의대가 속한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전의교협)는 총회를 거쳐 25일부터 교수들의 외래 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춰 줄이기로 했다.

다만 최악의 과곡만은 막자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그간 의대 정원 확충을 강력히 주장해왔던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대신 의사들이 복귀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도 지난 21일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전공의의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타협의 여지를 남겼다.

일부 전공의와 의대생 중심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는 전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긴급 성명을 내고 “각 학교 학생회는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협조하고 이들을 보호하라”고 했다.

복귀를 했거나 희망하는 이들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신고도 잇따르고 있는데, 복지부가 운영하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73건이다.

정부는 지난 2월29일 복귀 기한을 줬던 만큼 현재까지 미복귀자에 대한 처분은 불가피하다면서도, 3월 내 복귀자의 경우 향후 수련 과정에 지장이 없도록 처분 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본 처분이 이뤄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세월호 10주기, 사회적 재난 희생자 가족 등 연합 성찬회 24일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사회적 재난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고난주인 연합 성찬회가 열리고 있다.

## ‘사찰 시주금 횡령 의혹’ 60대 공양주 2심도 무죄

### 법원 “재정 예결산 없는 개인 사찰, 횡령 피해자 인정 어려워”

사찰의 시주금 등 재정 관리를 도맡다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재정 운영 방식 등에 비춰 사찰을 횡령 피해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입증 증거 역시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69·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남 순천 소재 한 사찰에서 신도 시주금·종교용품 판매금 관리 업무를 하면서 47차례에 걸쳐 총 1억 4835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찰이 창건할 때인 2002년부터 사찰에 살며 밥 짓는 일을 하는 ‘공양주’나 주지 승려를 대신해 재정 관리 업무를 맡았다.

이후 주지 B씨와 신도들과 잦은 내홍을 빚다가, 신도회장 측의 업무상횡령 혐의 고발로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A씨가 사찰 공금을 자신과 아들의 개인 명의 계좌에 이체, 사찰을 횡령 범죄의 피해자로 판단해 기소했다.

그러나 1심에서는 해당 사찰이 공소사실 성립 전제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찰의 운영 절차·방식 등에 비춰, 주지 승려 B씨가 직접 관리·운영한 개인 사찰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제출된 증거를 볼 때 A씨가 B씨의 통장·도장 등을 도맡아 관리하면서 자금 이용에 명시·묵시적 허락을 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봤다.

특히 A씨는 사찰 창건 과정에 참여하고 지금까지 단 점, A씨가 ‘공양주’로 일하는 동안 급여가 없었던 점, B씨가 사찰 재정 관리 절차·조직을 오랫동안 마련하지 않은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 오인이라며 항소했으나, 2심도 A씨의 혐의 입증에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사찰 재정의 예·결산 관련 절차나 논의된 바가 없다. 횡령 피해자 중 일부는 이미 신도들의 동의를 얻어 사찰 공용 차량 구입에 쓰인 점 등으로 미뤄, 사찰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른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주지 승려인 B씨를 피해자로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횡령이라 단정하기 부족하다.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슬비기자

## 광주 도심 3층 주택 균열·침하...인접 현장 공사중단

23일 오전 11시 22분께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지상 3층 규모 주택 건물에서 실내 벽체에 균열이 났다는 신고가 지자체에 접수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담장 등지에 균열이 있었고 일부 지반 침하 현상도 확인됐다.

관할 지자체인 북구는 건물 구조 안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북구는 신고자가 인접한 공사장에서 터 파기 작업 중 발생한 진동을 원인으로 주장한 만큼, 일단 관련 공사를 중단시켰다.

추가 안전 점검을 마치는 대로 공사 재개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뉴스스

## “녹음된 대화 재생해 듣는 행위 ‘청취’와 달라”

녹음된 대화를 재생해 듣는 행위는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듣는 ‘청취’와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녹음된 대화 내용을 듣고 그 녹음 파일을 제3자에게 전송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배우자인 피해자 B씨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B씨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20년 B씨의 집에 설치된 영상정보 처리기기(홈캠)를 통해 B씨 가족의 대화를 녹음하고, 해당 녹음 파일을 제3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이 외에도 B씨와 부부관계가 악화돼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하던 중 B씨의 차에 몰래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가지고 간 혐의도 적용됐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적용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동차 수색 등 3개의 혐의 중 휴대전화에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홈캠에 녹음된 B씨 가족들의 대화를 듣고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A씨는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B씨의 동의 하에 설치했고, 움직임을 인식한 홈캠이 자동으로 녹음했을 뿐 A씨가 녹음을 위해 추가로 한 ‘작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자동차 수색 혐의에 대해서도 자동차 보험상 운전자로 A씨와 B씨 모두 등록돼 있었고, B씨가 A씨에게 자동차 보조기를 맡긴 점, 수색 당시 부부관계가 아직 파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쌍방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2심에서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해 원심에서 주장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A씨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했다’는 것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타인 간의 대화 청취 행위’는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동시에 이를 청취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과거에 완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며 “녹음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가 금지된 대화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에서 판단한 해당 혐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가 불법으로 타인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에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도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도 ‘청취’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청취를 ‘녹음’과 별도 행위 유형으로 규율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법한 녹음 주체가 그 녹음물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한 녹음을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충분하고, 녹음에 사후적으로 수반되는 청취를 별도의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크지 않다. 또 적법한 녹음 주체 또는 제3자가 그 녹음물을 청취하는 경우까지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수권기자

## “나 건달이야” 웃밧고 경찰관 협박

###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 경찰관을 위협한 20대 조직폭력배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A(27)씨를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15분께 청원구 사창동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욕설 등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식당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체포 당시 자신을 건달이라고 밝히며 웃밧고 “다 죽어버리겠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서로 이송된 A씨는 담당 형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유나기자